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158
----------	---------

제출년월일 : 2003. 09. 1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낙하리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배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대표 모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중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주민중 파주시의회의장과 시장이 추천한 각 2인” 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 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 로 통합함(안제23조제1항 제2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 · 운영)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회 의원 2. 폐기물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주민중 파주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추천한 각2인. 3.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구성 · 운영)①----- ----- ----- -----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 3. (삭제) 4. 제1항제2호의 ----- ----- ---